

이천시 경관 조례

소관부서 : 미래도시과

제정 2011· 9· 22 조례 제 903호
전부개정 2014· 12· 31 조례 제1098호
일부개정 2014· 12· 31 조례 제1102호
(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일부개정 2015· 5· 4 조례 제1118호
일부개정 2017· 3· 7 조례 제1298호
(이천시청, 읍· 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
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8· 5· 18 조례 제1401호
일부개정 2021· 8· 3 조례 제1729호
일부개정 2024· 9· 30 조례 제2134호
(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
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)
일부개정 2025· 11· 7 조례 제2296호
(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
조례의 일괄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관계획”이란 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,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2. “경관사업”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경관협정”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.
4. “경관심의”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.
5. “경관사업자”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이천시장(이하 “시

장”이라 한다)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

6. “경관가이드라인”이란 건축물, 가로,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.

제3조(경관관리의 기본방향)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, 시의 자연·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

제4조(경관계획수립권자·사업자·시민의 책무)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,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가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) ①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경관계획수립제안서

가. 제안의 개요

나.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

다.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

라.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

마.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

2. 경관현황분석도

3. 경관기본구상도

4.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

5.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

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

2.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

3.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

4.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

5.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

6.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경관계획의 내용)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가로, 광장,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
2. 문화시설,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
3.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

4.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

5.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
6. 지역의 고유한 자연·역사·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1. 7>

1.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
2.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
3.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

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④ 공청회의 주재자·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경관사업의 대상)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2.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
3.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·관리를 위한 경관사업
4. 수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
5.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
6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경관사업계획서)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의 기대효과
2. 연차별 집행계획
3.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
4.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
5. 사업계획 관련 도서

제11조(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)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
2.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
3.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

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단, 금품·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하며,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1.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
2.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3. 경관 관련 전문가
4. 경관사업 시행자
5.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
6.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.

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서기는 그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.

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협의체의 기능)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
2.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

제14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.

1.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·설계비 및 연구비
2.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
3.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
2.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

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·12·31>

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5조(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)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·점유자·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
2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6조(경관협정의 내용)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

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
2.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3.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17조(경관협정서)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
2.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경관협정 관련 도서
4. 경관협정 이행계획

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8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
2.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19조(경관협정의 승계자)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(이하 “협정체결자”라 한다)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
2.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
3.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

제20조(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
2.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3.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, 설계비 및 연구비
4.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
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

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22조(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)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명
2. 경관계획과의 연계성
3. 사업비 산출근거
4. 사업비 조달 계획
5.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
6. 유지관리 계획
7. 사업계획 관련 도서

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23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)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)

2. 「철도건설법」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)
 3.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)
 4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)
 5. 그 밖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- [전문개정 2018·5·18]

제24조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의 50% 이상을 증축하여 기존 층수 또는 기준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. <개정 2021·8·3>

1.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물. 다만, 지상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.
2.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,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3.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내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건축물
 - 1)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- 2) 지상 5층 이상인 건축물
 - 3) 외벽을 판넬로 마감하는 건축물
 - 4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
 - 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며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시도로부터 가시권 5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(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 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로 다음 구분에 따른 건축물
 - 1)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- 2)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

3) 외벽을 판넬로 마감하는 건축물

4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

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·8·3, 2024·9·30>

1.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

2.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,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·어업용 창고,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
4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

5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1조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

6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

7.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

8.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았거나,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
[전문개정 2018·5·18]
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위원회는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8·5·18]

제2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·5·18>

1.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2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

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.
 4.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, 경관사업 시행자, 협정체결자,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 5. 경관계획수립권자, 경관사업 시행자, 협정체결자,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-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27조(수당 등)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8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·8·3>

1.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2.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9조(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)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2.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
3.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4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30조(경관위원회의 운영)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,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·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.
2.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3. 경관위원회의 심의·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,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·조사·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,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1조(소위원회의 운영)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·5·18, 2021·8·3>

1.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소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한 것으로 본다.
3. 경관위원회의 심의·자문대상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 할 수 있다.

가. 제24조제1항제3호 가목,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

나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

제3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4·12·31 조례 제1098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.

부칙 <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,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이천시 경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부터 ③4 까지 생략

부칙 <2015·5·4 조례 제111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3·7 조례 제1298호, 이천시청,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이천시 경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공공청사의 구분란 중 “주민센터”를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⑦ 생략

부칙 <2018·5·18 조례 제140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1·8·3 조례 제172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경관 조례

부칙 〈2024·9·30 조례 제2134호,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
조례의 일괄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5·11·7 조례 제2296호,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
조례의 일괄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삭제 <2018·5·18>

[별표 2] 삭제 <2018·5·18>